

# 예산총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23,649,495	21,709,485
일반회계	689,930,769	20,697,923
특별회계	33,718,726	1,011,562
공기업특별회계	10,993,911	329,817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0,993,911	329,817
기타특별회계	22,724,815	681,744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91,999	44,760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553,178	46,59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50,248	25,507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33,414	25,002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2,790,232	83,707
수질개선 특별회계	8,605,123	258,154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600,621	198,01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001,99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간주처리(예산계상 및 이월조치) 할 수 있다.